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10. 25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외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신설규정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제9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를 “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로 하고
- 제9조 제2항 1호의 “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 행위를 “지정된 장소외 흡연”으로 하며 제9조 제2항 4호 “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신설함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7조 제2항 10호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”를 “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로 한다

안 제9조 제2항 1호 “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“지정된 장소외 흡연”으로 하고

제9조 제2항 4호 “ 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신설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정안 |
|---|--|--|
| 제6조(개관) ①(생략) ②청남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하절기(3월~10월) : 오전 9시부터 <u>오후 6시까지</u> 2. 동절기(11월~2월) : 오전 9시부터 <u>오후 5시까지</u> | 제6조(개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청남대 관람시간은 <u>오전 9시부터</u> <u>오후 6시까지로 한다.</u> | 제6조 ①(현행과 같음) ②개정안과 같음 |
| 제7조(입장료 징수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1~9(생략)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div> | 제7조(입장료 징수 등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~9(현행과 같음) 10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| 제7조(입장료 징수 등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~9(현행과 같음) 10. 기타 도지사가 <u>도정운영에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되는 자</u> |
| 제8조(입장권) ①(생략) ②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고, 매표소에는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 | 제8조(입장권) ①(현행과 같음) ②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. | 제8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|
| 제9조(입장금지·제한) ①(생략) ②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<u>흡연·음주 또는 취사행위</u> | 제9조(입장금지·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1. 지정된 장소의 <u>흡연 및 음주 또는</u> <u>취사 행위</u> | 제9조(입장금지·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1. <u>지정된 장소의 흡연</u> 2. 현행과 같음 3. 현행과 같음 4. 음주 또는 취사행위 |

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9조의1(요금표 등 게시)청남대관리 사업소장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을 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9조의1 (개정안과같음)</p> |